

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南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大完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 따라 징수되고 있는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의 요율이 1990년 3월 28일 조정된 이후 10년여의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행정서비스 공급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수료를 조정하고, 법령 및 관련규정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발급신청이 없어 사문화된 수수료 종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고 행정여건 변동 등으로 수수료의 종목 또는 명칭의 변경과 신설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상기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 공급원가의 80%도 안 되는 종목으로는 별첨 참고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연번 7번까지의 인감증명 등 35개 종목의 요율은 인상 조정하였으며, 참고자료 3페이지 연번 8번부터 11번까지의 유원시설업 등 공중위생관련 4개 종목은 타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인하 조정하였으며, 법령 및 관련규정이 폐지 또는 발급신청이 없는 종목으로 참고자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세목별 납세증명 등 95개 종목은 폐지대상으로 하여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법령 제정 및 개정 또는 행정여건변동 등으로 참고자료 8페이지의 지방세완납증명 등 13개 종목은 명칭을 변경토록 하려는 것이며, 상기 와 같은 법령 및 여건변동 등으로 참고자료 9페이지의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등 9개 종목은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 현실화(인상) 수수료 종목 현황

가. 수수료 (28종목)

연 번	대 상 종 목	현요율	조정액	증·감율 (%)	비 고 (조정사유)
1	인감증명	300	500	66.67	
2	지방세 납세증명	350	500	42.86	명칭변경
3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350	500	42.86	명칭변경
4	무허가건물확인원	350	500	42.86	원가 재분석
5	공장 등록 증명	350	1,000	181.87	원가분석액의 58%로 조정
6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사실 증명	350	500	42.86	
7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550	1,000	82.82	원가 재분석
8	행정구역 명칭변경증명	350	500	42.86	원가 재분석 최저 수수료 500원으로
9	무적증명	350	500	42.86	
10	거주에 관한 증명	350	500	42.86	
11	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	3,300	3,500	6.06	
12	환지증명 또는 환지 예정지 증명	450	500	11.11	
13	경제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	5,500	8,000	45.45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변경) 증명	500	1,000	100.00	명칭변경
15	물품 또는 공사·용역실적 증명	400	1,000	150.00	명칭변경
16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 해 발급되는 증명	350	500	42.86	
17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550	10,000	1718.18	타구 현실화 10,000원 이하로 추진
18	출판사(인쇄소)등록신청	550	1,000	81.82	명칭변경
19	공유재산 대부(계속대부) 신청	950	1,000	5.26	명칭변경
20	공유재산 매수신청	950	2,000	110.52	명칭변경현실화 60%로 조정
21	인감(신규,개인,변경)신고	250	500	100.00	
22	입찰참가 신청	650	5,000	669.23	
23	종합병원개설허가	50,000	100,000	100.00	
24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30,000	50,000	66.67	
25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	20,000	30,000	50.00	
26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10,000	20,000	100.00	
27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0,000	20,000	100.00	
28	치과기공소 인정신고	2,000	20,000	900.00	

나. 공중위생관련 수수료(11종목)

연번	대상종목	현요금	조정액	증·감율 (%)	비고 (조정사유)
1	위생처리업	7,000	20,000	185.71	
2	위생처리업 변경	3,500	10,000	185.71	
3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7,000	20,000	185.71	
4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	3,500	10,000	185.71	
5	장난감제조업	7,000	20,000	185.71	
6	장난감제조업 변경	3,500	10,000	185.71	
7	이·미용업 신규면허	3,000	5,000	66.67	
8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92,280	60,000	△34.98	명칭변경
9	유원시설업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허가사항변경신청	46,140	30,000	△34.98	명칭변경
10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46,140	30,000	△34.98	명칭변경
1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사항 변경 신청	23,070	15,000	△34.98	명칭변경

2. 폐지수수료 종목 현황

가. 수수료 (67종목)

연번	수수료명	수수료금액	폐지사유	담당부서
1	세목별 납세증명	350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으로 통합	세무관리과
2	공부의 등본· 초본·하부원본 (환지에정지 및 확정지적도 포함)	350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근거없는 민원임	지 적 과
3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검사 증명	350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민원사무 처리편람에 수수료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증명발급 실적없음)	건 축 과
4	시영주택분양 금 납부증명	350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 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도시개발 공사에서 발급되는 증명 (증명발급 실적없음)	도시관리과
5	생산실적증명	350	민원사무편람및민원사무처리기준표 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증명 (증명발급 실적없음)	지역경제과
6	실수요자증명	350	'66년 당시 증명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증명, "본증명"없이 불품구입 가능	지역경제과
7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350	민원사무편람및민원사무처리기준표 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증명 (증명발급 실적없음)	지역경제과
8	원자재(시설재) 증명	350	민원사무편람및민원사무처리기준표 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증명 (증명발급 실적없음)	지역경제과
9	재적기재 사실증명	350	호적법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직접규정(제적등본으로 대체)	민원봉사과
10	부양사실증명	350	'73년 당시 지침으로 시달된 증명 민원사무편람및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 재되어 있지 않은 증명 (증명발급실적 없음)	총 무 과
11	외국인등록표(제 교부)신청	350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민원봉사과
12	도시계획 확인원	750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제4항에 의거 도시이용계획확인서로 변경 발급	지 적 과

연번	수수료명	수수료금액	폐지사유	담당부서
13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350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 및 민원사무 편람에 없는 증명(증명발급실적 없음)	지 적 과
14	지적공부정비 원료증명	350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 및 민원사무 편람에 없는 증명(증명발급실적 없음)	지 적 과
15	물품납품 실적증명	500	민원사무편람및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증명 (증명발급 실적없음)	재 무 과
16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보관확인증	500	보증금 예치시 구급고(은행)에서 별도 영수증 발행(보관확인증 불필요)	재 무 과
17	보상금 지불증명	350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증명(증명발급 실적없음)	도 목 과
18	자동차세증명	1,00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 별표30에 별도규정	교통행정과
19	각종공무원열람	100	행정정보공개수수료와 중복	민원봉사과
20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550	행정서사업폐지 행정사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4호 서식(수수료없음) 규정	총 무 과
21	도로·하천부지점 용(지하도·지하상 가노상주차장) 허가	600	도로법 제7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33조 제1항 2호에 별도규정	건설관리과
22	공유수면점용허가	550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 서식에 수수료없음 규정	건설관리과
23	권리변경(계개발지 구)행위허가신청	550	도시개발법 제6조 제1항 폐지로 총무 삭제	도시관리과
24	숙박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550	공중위생법 폐지,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	보건위생과
25	식품환경 영업허가 증 재교부 신청	500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별표19에 직접규정	보건위생과
26	공중목욕탕 영업허 가증 재교부 신청	550	공중위생법 폐지,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	보건위생과
27	토지형질변경 (택지변경) 행위허가신청	2,000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 칙 제3조 및 별지1호서식에 수수료없 음 규정	도시관리과
28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5,000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별지 13호서식(수수료없음) 규정	문화체육과
29	이미용업 개설 신고증 재교부	550	공중위생법 폐지,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	보건위생과
30	사실시장개설 및 경선 신청	550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지11호 서식에 수수료별도규정	지역경제과
31	시영주택(택지)양 도 양수 소유권 이 전·해지 승인신청	550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도시개발 공사에서 발급하는 증명	도시관리과
32	시영주택(중·개축))승인 신청	550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도시개발공 사에서 발급하는 증명	도시관리과
33	급수공사 신청	550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기에13388-193 9('97.7.12)호에 의한 급수공사 수수 료 폐지	치 수 과
34	음반비디오물 유 통관련업 등록신청	4,00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규정(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함)	문화체육과
35	음반 비디오품유 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2,000	"	문화체육과
36	음반비디오물 유 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2,000	"	문화체육과
37 ~ 67	광고물설치허가수 료(31종)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수수료) (수수료납부 시·도의 조례가 정한 바 에 따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 례제31조제1항 및 제34조 별표에 직 접 규정	건설관리과

나.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28종목)

연번	수수료명	수수료금액	폐지사유	해당부서
1	호텔업 허가	184,560	공중위생법 폐지, 공중위생관리법 제정(허가(신고)제에서 통보제 전환)	보건위생과
2	호텔업 변경허가	92,280	“	“
3	콘도미니엄업	184,560	“	“
4	콘도미니엄업변경	98,260	“	“
5	여관업	61,520	“	“
6	여관업 변경	30,760	“	“
7	여인숙업	15,380	“	“
8	여인숙업 변경	7,620	“	“
9	공동탕업	18,450	공중위생법폐지,공중위생관리법 제정(허가(신고)제에서 통보제 전환)	보건위생과
10	공동탕업 변경	9,230	“	“
11	가족탕업	18,450	“	“
12	가족탕업 변경	9,230	“	“
13	한증막업	18,450	“	“
14	한증막업 변경	9,230	“	“
15	사우나탕업	92,280	“	“
16	사우탕업 변경	46,140	“	“
17	티키타업	92,280	“	“
18	티키타업 변경	46,140	“	“
19	복합목욕장업	92,280	“	“
20	복합목욕장업변경	46,140	“	“
21	컴퓨터 게임장업	46,140	“	“
22	컴퓨터 게임장업 변경	23,070	“	“
23	이미용업	12,000	“	“
24	이미용업 변경	6,000	“	“
25	위생관리용역업	7,000	“	“
26	위생관리용역업 변경	3,500	“	“
27	세탁업	7,000	“	“
28	세탁업 변경	3,500	“	“

3. 명칭변경 수수료 종목 현황

가. 수수료 (9개 종목)

연번	종목 변경		변경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지방세원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정수유예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명칭 변경	현실화 (인상)
2	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과 세목별 납세증명 통합	현실화 (인상)
3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증명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변경)신청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현실화 (인상)
4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물품 또는 공사 용역실적증명	물품납품 실적증명과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통합	현실화 (인상)
5	출판사인쇄사 등록 신청	출판사(인쇄소) 등록 신청	출판사 및 인쇄소의등록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조2 별지 제1호서식	현실화 (인상)
6	시유재산 대부(계속 대부) 신청	공유재산대부 (계속대부)신청	시유 및 공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통합	현실화 (인상)
7	시유재산 매수 신청	공유재산매수 신청	“	현실화 (인상)
8	공연장설치허가신청	공연장업 등록 신청	공연법전문변경('99.2.8)	
9	공연장설치 허가사항 변경신청	공연장업 변경 등록신청	“	

나.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4개 종목)

연번	종목 변경		변경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종합유원 시설업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공중위생법폐지('99.2.8) 관광진흥법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	요금조정 92,280→60,000
2	종합유원 시설업변경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허가사항변경신청	“	요금조정 46,140→30,000
3	기타 유키장업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	요금조정 46,140→30,000
4	기타 유키장업 변경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사항 변경 신청	“	요금조정 23,070→15,000

4. 신설 수수료 종목 현황

연번	수수료 명칭	원가분석액	수수료액	신설사유	비고
1	한국영화 연간 의무 상영일수 감경신청	2,173	2,000	영화진흥위원회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별지17호서식	
2	출판사(인쇄사)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1,211	1,000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3	개발공시지가 확인서	509	50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법인)	23,527	20,000	부동산중개업법 제27조3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개인)	9,527	8,600	“	
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중 재교부 신청서(법인·개인)	3,095	3,000	“	
7	부동산중개업 분사 무소설치신고서	23,527	20,000	“	
8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9,631	10,000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9	치과기공서 양도양수신고	9,631	10,000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세입과 관련된 35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였으나 폐지종목이 95개 종목이나 되어 연간 수수료 수입액 2억 2,346만원 대비 4억 4,790만원으로 실제 인상효과는 99.5%이며, 금액으로는 2억 2,344만원 수준입니다.

1990년 대비 소비자물가를 보면 쌀 1가마에 1990년도에는 9만 6,196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16만 7,627원이며, 휘발유 1ℓ는 1990년도 383원에서 2000년도에는 1,322원, 지하철 1구간 요금은 200원에서 2000년 600원, 버스요금은 140원에서 2000년 600원으로 각각 245.1%, 200%, 328.5% 등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 수수료 인상폭은 소비자물가와 비교해 볼 때 크다

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南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
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孫英相 委員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공급원가의 80%에도 미치지 못
하는 28개 종목의 수수료가 무엇인지 대표적
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洪性倍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이 제일 건수가 많고, 그리고 대표
적인 것이 세목별 과세증명, 거주에 관한 증
명, 환지증명 또는 환지에정지증명, 경쟁입찰
자격등록증명, 물품 또는 공사·용역실적증명,
출판사등록신청, 인감(신규·개인·변경)신고,
입찰참가신청이 주로 건수가 많습니다.

○孫英相 委員 80%를 인상해서 현실화할
경우에 세입에 어느 정도...

○財務局長 洪性倍 연간 한 2억 3,000만원
정도 증가될 걸로 판단됩니다.

○孫英相 委員 기존 건수에 대비해서 볼
때?

○財務局長 洪性倍 예, 그렇습니다.

○孫英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南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賓雄吉 委員 빈웅길 위원입니다.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부적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전에는 300원이었는
데? 개별공시지가가 나온 것이 한 10년 정도
되죠?

○財務局長 洪性倍 예, 그렇게 되죠.

○賓雄吉 委員 그러면 한 필지라고 했으니
까 1년치를 합하면 10개가 되겠네요?

○財務局長 洪性倍 개별공시지가는 지번 하
나 하나에...

○賓雄吉 委員 쉽게 얘기하면 개별공시지가
는 지번 하나 하나에 나오는데, 개별공시지가
가 시작될 때부터 현재 2000년도까지 빼어오
라고 했을 경우에는 10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에 10개를 빼면 500원씩이면 5,000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財務局長 洪性倍 통수가 10통이 되는 거
죠.

○賓雄吉 委員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땅덩어리
가 많은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너무 큰 액수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
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財務局長 洪性倍 지금 500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원가의 80%에 못 미치는 정도이
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가는
분들이 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
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
니다.

○賓雄吉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여
평 정도가 한 덩어리 땅인데 여러 필지로 분
할이 되어 있을 경우 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
고 3개로 분할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30건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죠.

○財務局長 洪性倍 그런데 500원이면 수수
료 중에서 가장 낮은 요율입니다.

○賓雄吉 委員 500원이면 1만 5,000원이
되거든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洪性倍 지금 500원이라고 하면
통님 가치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요율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賓雄吉 委員 타구나 시는 벌써 3년 전에
개정해 가지고 실시를 했고, 또 요즘에 와서
현실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우
리구는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것 같다는 말씀
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南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永登浦區公衆衛生業營業許可
等에關한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永登浦區
廳長提出)

(14時 20分)